



비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 자료 제공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비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비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비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비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의 비용기에 한정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다음에 비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비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비용기보증금의 인상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비용기를 매점하거나 반환을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2. 제1호 외 비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3. 기타 비용기를 수집·보관 및 운반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기를 과다하게 보관

하거나 반환·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비용기 반환·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 평균 비용기 반환·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30일 이내 반환하지 않는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이외의 장소에 비용기를 보관하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비용기를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반환·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법 제28조의2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는 “비용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비용기 매점매석행위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유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운영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6조(고시 위반 시 제재조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 11.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KOPA NEWS 신청

(사)한국포장협회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 온라인 뉴스레터
'KOPA NEWS' 를 제작, 발송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실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